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0. 김민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민전 의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선영)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관으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윤리적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활용과 윤리 확립을 위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과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학생과 교원에 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인공지능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기본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현행 「교육기본법」의 취지가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개정안도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정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